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대상자와 직무범위 확대>
▣ 장동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382호)

2025. 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2

2. 검토의견 ····· 4

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장동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9. 26.

3. 회 부 일 : 2024. 9. 27.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마약진통제·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의 오남용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경찰관리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형사벌칙 등 강력한 제재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마약류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제9호의2 및 제6조제7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대상자에 “마약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추가하고, 이들에게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에 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임(안 제5조제9호의2 및 제6조제7호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9의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마약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0. ~ 53. (생 략)	10. ~ 53. (현행과 같음)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5조제9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약류취급자(같은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대마재배자는 제외한다)에 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8. ~ 50. (생 략)	8. ~ 50.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가.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현황

□ 현행법은 식약처에 근무하며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고,[1] 이에 따라 식약처는 수사 전담부서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정원 44명)을 두고 최근 5년간 매년 300건 이상의 수사실적을 보이고 있음.

---

1)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8.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식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9.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위생용품 단속 사무 및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험·검사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8.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단속 사무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된 농수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친환경농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된 축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마.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인삼에 관한 단속 사무
바.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양곡에 관한 단속 사무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6. 제5조제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7. 제5조제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약사법」·「화장품법」·「의료기기법」·「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위생용품 관리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약사(藥事)에 관한 범죄
25. 제5조제2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범죄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마.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바.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 운영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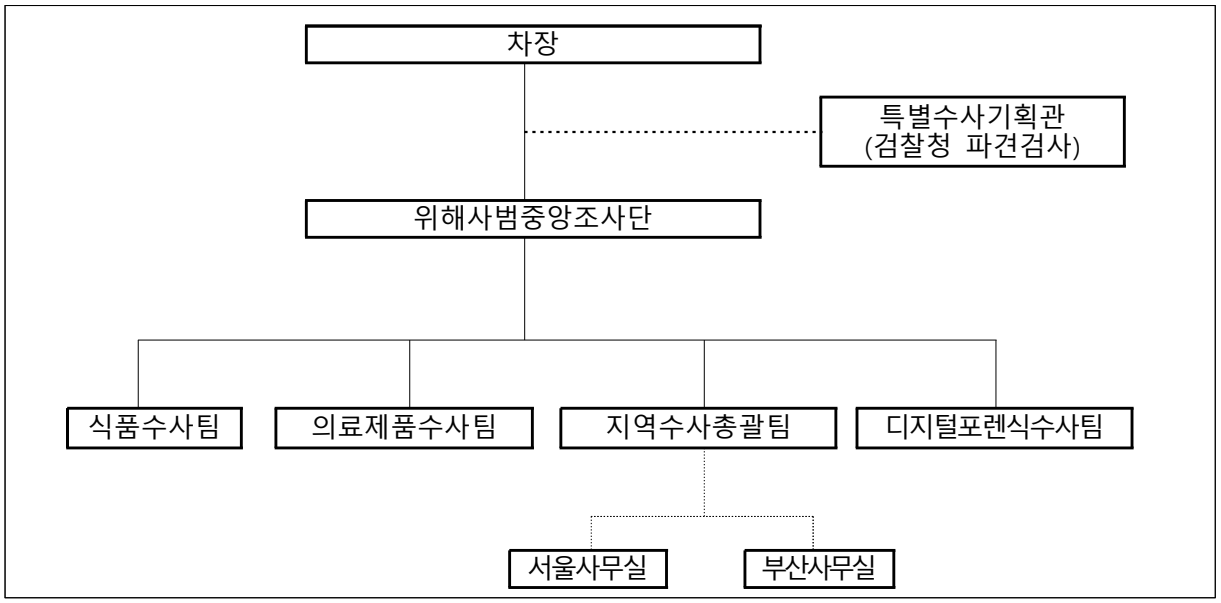

자료: 식약처

<최근 3년간 분야별 검찰 송치 건수 현황>

(단위: 건/명)

연도	합계	식품	건강 기능식품	축산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2019	313/471	166/251	5/7	34/54	46/73	34/37	28/49
2020	359/519	177/239	2/4	11/18	129/189	21/31	19/38
2021	276/443	201/270	1/2	5/11	46/114	12/18	11/28
2022	200/313	105/162	5/5	16/21	55/97	16/23	3/5
2023	272/406	125/158	10/24	7/16	57/102	40/46	33/60

자료: 식약처

나. 개정안에 따른 대상 범죄 개관

□ 개정안은 식약처 소속 “마약류 단속사무 종사 공무원”에게 부여하려는 사법경찰권의 직무범위를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중에서도 마약류 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에 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2]”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고, “마약류 취급자[3]”는 마약류 수출입업자·제조업자·관리자·취급의료업자 등으로서 동법에 따라 허가·지정받은 자 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의사·약사를 말함.

---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ㆍ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마약류취급자 업종 및 법적 정의 등>

연번	업 종	법적 정의	허가·지정
1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을 제조하는 자	식약처 허가
2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향정을 수출입 하는 자	
3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 향정을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는 자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 향정, 대마를 학술연구에 사용하는 자	
5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 향정을 의료 목적으로 투약·처방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자동 지정
6	마약류소매업자	마약, 향정을 조제하는 약국개설자	
7	마약류관리자	의료기관 내 마약류 관리를 담당하는 약사	지자체 지정
8	마약류도매업자	마약, 향정을 병의원, 약국 및 학술연구자에게 판매하는 자	지자체 허가
9	대마재배자	섬유, 종자 채취를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약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지정을 받은 마약류취급자에 대해서만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거나 불법 유출하는 경우 등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취급자 관련 범죄 개관>

조 항	위반행위자	법정형
제59조	(제12호) **마약류취급자가 아닌자가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4호)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가 **아닌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제60조	(제4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아닌자가 마약류를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등 마약류취급자가 **그 업무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61조	(제7호) **마약류취급자가 그 업무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호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취급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제10호의2) **마약류수출입업자**가 **품목마다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	
	(제10호의3) **마약류제조업자가 품목마다 식약처장의 허가 및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	
	(제10호의4) **마약류원료사용자가** 한외마약을 제조하면서 **품목마다 식약처장의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제11호)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닌자**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한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12호)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제62조	(제1호) **마약류취급자**가 마약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수입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호) **마약류제조업자**는 제조한 마약을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판매한 경우**, 등 **그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마약을 취급한 자**	

조 항	위반행위자	법정형
제63조	(제2호) **마약류취급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그 조제한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호)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수입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판매한 경우 등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제5호) **마약류취급자**가 이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으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대마를 취급**한 자	
	(제6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제7호) **마약류취급자 등**이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약처장에게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제8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 기재사항을 미기재**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제8호의2) **마약류취급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 명령 및 관계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명령을 하였으나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제9호)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분실 또는 도난 등 보고를 거짓**으로 보고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사고 마약류 등 폐기 절차를 위반하여 마약을 폐기**한 자	
	(제10호) **마약류관리자가 지정 효력이 상실**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다른 마약류관리자에게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고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않는 등** 이 법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제11호) **마약류수출입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이 법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제14호) 마약을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 검사, 수거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수출입·제조·매매 등을 한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및 임시마약류에 대한 **압류나 그 밖의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5호)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 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조 항	위반행위자	법정형
제64조	(제1호)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호) 마약류취급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에 대한 사항 등을 식약처장에게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4호) 마약류취급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5호)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사유 등으로 폐기하는 경우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절차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폐기**한 자	
	(제6호)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사유 등으로 폐기하는 경우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절차를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한 자**	
	(제8호)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 등이 마약류를 판매·수출·양도할 때 **용기나 포장을 봉함하여야 하나 봉함하지 않는 등** 이 법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제9호)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또는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다른 마약류취급자 또는 다른 마약류관리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 또는 인계하지 아니한 자**	
	(제10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광고의 기준 등을 위반한 자**	
	(제11호) 다른 의약품과 구별 저장 등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저장 기준을 위반**하여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를 저장한 자	
	(제12호) **마약류도매업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 외의 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나 이를 위반하여 판매했을 경우,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제12호의2)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제13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고**한 자	

조 항	위반행위자	법정형
	(제15호) 마약류취급자가 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제16호) 향정신성의약품, 예고임시마약류,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가 **폐기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거나 **검사·수거·압류 또는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8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제68조	제59조·제60조·제61조·62조·63조 또는 제64조 벌칙에 대한 **양벌규정**	

다.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대상자와 직무범위 확대 적절성

□ 「마약류관리법」 제41조[4]에 따르면 식약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약류 등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업소나 조제 장소 등에 출입하여 각종 서류, 의약품 등에 대한 검사 및 마약류 수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제47조[5]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부정 마약류를 압류하거나 처분하는 등 마약류 관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그런데 식약처 공무원이 이러한 단속·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정 마약류를 발견하거나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처방 등의 불법행위 정황을 인지하더라도 일반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 인계만이 가능하여 마약류에 관한 단속과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4) 제41조(출입·검사와 수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해당 업소나 공장·창고, 대마초 재배지, 약국, 조제 장소, 그 밖에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에 관계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업소 등의 구조·설비·업무현황, 기록한 서류와 의약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
2. 관계인에 대한 질문
3. 마약류·임시마약류·원료물질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과 물건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수거. 이 경우 시험용으로 필요한 최소 분량으로 한정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센터의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5) 제47조(부정 마약류의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재배,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조제 또는 연구에 사용하는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및 임시마약류에 대하여는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특히 최근 프로포폴 상습 투약 사건 등 진통제·식욕억제제와 같은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개정안은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 대상자에 “식약처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마약류 단속 사무 종사 공무원”을 추가하고 이들에게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의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단속과 수사의 일원화를 통해 불법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라 “마약류 단속사무 종사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수사의 효율성과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식약처는 「마약류관리법」 소관 부처로서 마약류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고, 식약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6]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등을 수사에 활용할 수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의 용이한 현장 접근성을 통해 신속한 혐의발견 및 증거확보가 가능하게 되는바, 수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

6) 「마약류관리법」 제11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통합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특히 개정안은 직무범위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중 “마약류 취급자”에 관한 범죄로만 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마약류 관련 범죄는 현재와 같이 일반사법경찰관이 수사하되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 관련 범죄는 의료용 마약류 분야에 있어 각종 자료와 전문성을 지닌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할 수 있도록 이원화함으로써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특별사법경찰은 수사의 전문가가 아닌 행정공무원 등에게 강제수사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일반사법경찰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바, 관련 범죄 수사에 있어 일반사법경찰이 아닌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여야 할 특수성 또는 불가피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한편, 개정안은 특별사법경찰관리 대상자에 “식약처 및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도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박균택의원(제2202087호), 김주영의원안(제2202837호) 및 이수진의원안(제2205171호)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 **대한의사협회**는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과 오남용 의심 처방에 대한 심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필요시

수사의뢰·고발조치 등을 이미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점, 마약류 투약이력확인의무화 제도 등 마약류 오남용 관리를 위한 다양한 규제와 제도가 도입·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는 것은 필수적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와 행정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 수사의 비전문가인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강제수사할 경우 의료인 등에 대한 기본권 침해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070

[참고자료 1] 특별사법경찰제도 개관

□ 현행법상 사법경찰은 크게 ①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에 소속되어 범죄에 대한 일반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일반사법경찰과 ②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되어 특정한 영역의 범죄에 대하여만 수사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 두 종류로 구분되고 있음.

□ 특별사법경찰은 ① 전문적인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된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고, ②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범죄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범죄 수사를 도모할 수 있는 등의 취지에서 1956년 도입되었고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2023. 12. 31. 기준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이 약 14,500명,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이 약 6,000명에 이르고 있음.

[참고자료 2] 기관별 · 분야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2023.12.31.기준)

1. 중앙행정기관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자료제공: 법무부 형사기획과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지명인원
1	기획재정부(관세청)	관세법 등 위반 범죄	501
2	기획재정부(국세청[7])	조세 관련 범죄	5,273
3	법무부(교소도등)	교도소, 구치소 등 내에서 발생한 범죄	1,358
4	국방부(기무사등)	군용물, 군사기밀보호법, 병역법 등 위반 범죄	312
5	병무청	병역법 위반 범죄	40
6	소방청	소방기본법 등 위반 범죄	2,157
7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위반 범죄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9
8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과)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26
9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반 범죄	1,128
10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사업법 위반 범죄	38
1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식품방역법 위반 범죄	208
1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위반 범죄	-
13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산림, 임산물, 수렵 관련 범죄	179
14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	광산보안법위반범죄	14
15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상표법 등 위반 범죄	45
16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과)	청소년보호법위반 범죄	4
17	환경부(국립공원공단)	환경 관련 위반 범죄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죄	600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지명인원
18	환경부(환경청)	환경 관련 위반 범죄	69
19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1,057
20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도로법 등 위반 범죄	60
21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457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법 등 위반 범죄	141
23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반 범죄	165
24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	어업자원보호법 위반 범죄	503
25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범죄	26
26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관리법 등 위반 범죄	18
2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약사, 보건범죄 위반 범죄	36
28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및 의료법 등 위반 범죄	12
29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설비 및 방송통신설비 위반 범죄	22
30	대통령경호처	경호업무 수행 관련 범죄	28
31	행정안전부	안전분야 관련 범죄	3
32	환경부	환경 관련 위반 범죄	13
33	국토교통부	교통 등 불법행위 조사, 단속	4
34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범죄	25
35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	5
합 계			14,536

7) 기획재정부(국세청) : 세무공무원은「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조사공무원'으로서 조세범칙 혐의 유무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혐의자 등에 대해 심문·압수·수색·범칙 처분을 하는 등 사실상 특사경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지명절차도 법무부 예규인「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고 있어 관례적으로 특사경 인원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지명인원
1	서울특별시	식품, 공중위생 등 관련 범죄	400
2	부산광역시	〃	334
3	인천광역시	〃	371
4	대구광역시	〃	203
5	대전광역시	〃	172
6	광주광역시	〃	166
7	울산광역시	〃	235
8	세종특별자치시	〃	45
9	경기도	〃	730
10	경상남도	〃	404
11	경상북도	〃	595
12	충청남도	〃	583
13	충청북도	〃	528
14	전라남도	〃	465
15	전라북도	〃	273
16	강원특별자치도	〃	531
17	제주특별자치도	〃	33
합 계			**6,068**